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분양안내



기업인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입주업체 편의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문화동)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헬스팀
TEL (043) 220-4621~3 FAX (043) 220-4619
<http://www.chungbuk.go.kr/>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경제정책실 신산업육성팀
TEL (043) 730-3371~3 FAX (043) 731-2913
<http://www.oc.go.kr/>



2853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한화생명 6층 투자유치부
TEL 1899-9485 FAX (043) 210-9139
<http://www.cbdc.co.kr>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BEST VISION

- 오송 의약바이오, 제천 한방바이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바이오 삼각망 구축
- 옥천 의료기기단지 확장 개발, 의료기기 기업 추가 유치를 통한 옥천 의료기기밸리를 특화·발전



6대 신성장 동력산업 바이오 산업



**옥천
의료기기밸리**

- 제2의료기기단지조성
- 융복합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

**오송
바이오밸리**

- 첨단의료복합단지 완성
-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 확장품연구개발센터

**괴산
유기농 밸리**

- 2015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 유기식품산업단지조성

**충주
당뇨바이오밸리**

- 국민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
-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 예방·관리, 산업인프라 확충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헬스케어 관광산업 중심의 의료기기밸리

오송[바이오밸리] ↔ 제천[한방바이오밸리] ↔ 옥천[의료기기밸리]을
잇는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 충북의 중심 바이오 산업축 형성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가풍리, 구일리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사업규모 : 351,661㎡ (산업시설용지 242,709㎡)
- 분양예정가 : 39만원/3.3㎡ (단, 정산시 조정)
- 유치업종 : 의료기기제조업, 의료용품 및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등
- 사업시행자 : 옥천군, 충북개발공사

[사업위치]

-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육상물류의 중심(옥천C)
- 경부선(옥천역) 및 경부고속철도(대전역)이 지나가는 철도교통의 중심
-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첨단제품의 수출입이 매우 편리(북경, 선양, 항저우)
- 서울172km, 평택항130km, 세종59km, 청주50km, 대전18km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국2시간대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

생활권이 대전광역시권에 포함되어 대덕테크노밸리와
오송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할 경우 지식산업육성을 위한 최적지

탄력적인 유치업종 배치 (맞춤형도 가능)

기업인들의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입주를 정성껏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242,709	100.00
의료기기 관련산업	C21	95,770	39.46
	C26		
	C27		
	C28		
	C29		
바이오 식품 및 가공(포장) 산업	C10	88,381	36.41
	C11		
	C16		
	C17		
	C22		
	C23		
C33	기타 (유치제한업종 :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8,558	24.13



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부지공급 가능

토지공급시기

- 토지사용예정일 : 2019. 상반기
- 토지소유권이전예정일 : 2020. 상반기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합계	351,661	100.0
산업시설용지	242,709	69.0
지원시설용지	5,167	1.5
공원	24,515	7.0
녹지	28,487	8.1
주차장	2,164	0.6
유수지	6,515	1.9
배수지	1,571	0.4
도로	40,533	11.5

[획지계획]

가. 산업시설용지

구분	면적(m ²)	구분	면적(m ²)	구분	면적(m ²)
산업1-1	9,958	산업3-7	3,435	산업5-7	4,934
산업1-2	9,984	산업3-8	4,702	산업5-8	4,835
산업2-1	5,231	산업3-9	4,524	산업6-1	4,129
산업2-2	5,566	산업3-10	3,908	산업6-2	4,138
산업2-3	5,317	산업3-11	3,262	산업6-3	3,537
산업2-4	7,410	산업3-12	3,035	산업6-4	3,760
산업2-5	6,335	산업4-1	16,287	산업6-5	4,400
산업2-6	5,521	산업4-2	10,782	산업7-1	5,278
산업3-1	3,197	산업5-1	5,115	산업7-2	5,654
산업3-2	3,396	산업5-2	5,371	산업7-3	7,576
산업3-3	3,834	산업5-3	5,393	산업8-1	12,981
산업3-4	3,914	산업5-4	4,963	산업9-1	12,265
산업3-5	4,254	산업5-5	4,747	산업9-2	11,788
산업3-6	3,227	산업5-6	4,766	계	242,709

나. 지원시설용지

구분	면적(m ²)
지원1-1	767
지원1-2	767
지원1-3	767
지원2-1	956
지원2-2	850
지원3-1	1,060
계	5,167

다. 주차장

구분	면적(m ²)
주차장1	2,164

라. 배수지

구분	면적(m ²)
배수지1	1,571



• 유망 의료기기 창업기업을 위한 임대공장 (보육실 18실, 멸균실 6실)



•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위한 임대공장 (보육실 10실, 멸균실 3실)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가.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대 상		감면내용	현소재지	일몰기한
국 세	공장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그 후 5년간 분할 납부	대도시	2020년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20년말
	2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전부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20년말
	3년이상 영위한 공장 또는 주사무소	•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20년말
지 방 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18년말
	공장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대도시	2018년말

나. 창업·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추진 중)

대 상		감면내용	현소재지	일몰기한
국 세	공장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제한없음	2018년말
지 방 세	공장	•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제한없음	2019년말

다. 기타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대 상		감면내용	현소재지	일몰기한
지 방 세	공장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제한없음	2019년말

* 상기 지원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투자유치부(043-210-9144)로 문의 바랍니다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구분	수도권 지방 이전 투자기업 지원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기준	①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②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③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④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⑤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⑥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⑦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⑧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①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② 기존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③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광역 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할 것 ④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10%(최소 10명) 이상일 것 -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50명 이상), 대기업(100명 이상) 가능 ⑤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지식서비스산업(투자금액 5억원 이상), 대기업(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⑥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					
지원기준 특례	①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 금액의 지원 비율을 가산 ② 지방투자기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 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 비율을 2% 가산	①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 금액의 지원 비율을 가산					
지원대상 업종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부동산 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건설업 중 제조업 영위사실 입증 및 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시 가능)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지원내용	① 입지 : 토지매입가격의 40% 이내 (기존사업장 면적 및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에 따라 금액인정범위 상정) ②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24% 이내	① 입지 : 미지원 ②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24% 이내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우대지역	입지	0%	20%	40%	0%	0%	0%
	설비	11%	19%	24%	11%	19%	24%
지원한도	기업당 국비지원 60억원 한도(지원범위 초과시 위원회 심의 필요)						
지원 시기	입지	착공신고 확인 후 100%			미지원		
	설비	① 1차 : 착공신고 확인 후 70% ② 2차 : 정산완료 후 30%			좌동		

* 상기 지원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투자유치부(043-210-9144)로 문의 바랍니다